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2011. 12

이세진



사업평가현안분석 제34호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총괄 | 박용주 (사업평가국장)

기획·조정 | 천우정 (행정사업평가팀장)

집필 | 이세진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지원 | 황수지 (행정사업평가팀)

문의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02-788-4749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이 세 진

2011. 1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 간 사

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제141차 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제141차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제141차 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제141차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제141차 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제141차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제141차 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제141차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제141차 201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제141차

2011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

요 약

I. 서 론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I. 지방재정 현황 및 지방세제 변천

1. 지방세 세입 현황

- □□□□□□ □□□□□□ □□□□□□ □□□□□□, □□□□□□ □□□□□□ □□
□□□□□□ □□□□□□ □□□□□□ □□□□□□.
- 2011□□ □□□□□□□□ □□□□(□□□□□+□□□□□)□□ □□□□41.1%
 - 2005□□ □□□ □□□□□ □□□□ □□□□□□ □□□□□ □□□, 2011□□ □□
□□□□□□□40%□□ □□□□.
- 의존재원 비중: 2005□□35.2% □□2007□□38.0% □□2011□□41.1%
- □□□□ □□□□□□2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 □□□□□□□□2010□□ □□□□□□ □□□3.9% □□□□49.7□□□□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15.3□□□2010□□29.7□□, □□□□14.2%□
□ □□□□□: 2005□□17.2□□□2010□□25.5□□, □□□□8.2%□
 - □□□□□□□ □□□□□□ □□□ □□□□□ □□□□□□□ □□□□□□ □□□□□
□□□□□□□□□□ □□□□□ □□□□□ □□□□□□□□□□ □□□.

2. 2011년 지방재정 현황

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 2010 □□ 139 □□ 8,565 □□ □□ 2011 □□ 141 □□ 393 □□ (0.8% □□)
 - □□□□□□ (1.5□□□□) □□ □□□□□□ (2.7□□□□)
 - □□□□□ □□ □□□□□ □□ □□□□ □□□□ (1.9□□□□ □□), □□□□ □□□□ □□ □□□□ □□□□ □□ □□□□ □□ □□ □□ □□□□□□ (1.5□□□□)
 - □□□□□□□ □□ □□□□ □□□□□ □□□ □□□□ □□□ □□□□□ □□□□□ □□□□□□ (1.9□□□□)
 - □□□□ □□□□ □□□□□□ □□ □□□□ (1.9□□), □□□□ □□□□ □□□□ □□ □□□□ □□□□ □□□□□□ (0.9□□)

나. 2011년도 지방재정 여건

- □□□□□ □□□□□□ □□
 - □□□□□ □□□□ □□ □□□□ □□□□ □□□□ □□□ □□□ □□ □□□□□ □□ □□□□ □□□□ □□□□ □□.
- □□□□¹⁾ □□□□ □□ (1.7□□□□) □□ □□□□ □□ (1.5□□□□) □□ □□ □□□□□□ □□ □□
 - 2010 □□□□ □□□□□ □□□ □□ □□□□ □□□□ □□□ □□ □□ □□□□□, 2011 □□ □□□□ □□□□ □□□□□ □□□□ □□
- □□□ □□□□ □□□□□□ □□□□□ 30 □□□□ □□
 - □□□□ □□□□ □□□□ □□□□ □□□□ 2010 □□ □□□□□□ □□□ □□□□ □□, 2011 □□□□ □□□□ □□□ □□□ □□

1) 일반재원은 사용에 있어서 조건이 붙지 않은 재원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의미

- [illegible]

Ⅲ. 지방세제 평가

1. 총괄평가

가. 재원의 배분

- [illegible]

나. 재정적 독립성

- [illegible]

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비중 및 세목별 비중

- [illegible]

- □□□□□ □·□□□□□ □□□ 큰 □□□□ □□□□ □□.
- □□□□ 2000~2009□□ □□□ □□□□ □□□□, □□□□ □□□□ □□
□□ □□□ □□□ 22.0%, □□□□ 19.5%, □□□□ 17.3% □□□□ □□□
□, □□□ □□□ □□□ 36.7%, □□□□ 32.3%, □□□육□□ 22.2% □□□□
□□□□ □□□□□ □·□□□□□ □□□□ □□□□ □□□□ □□남.

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 [illegible]

2. 세목별 평가

가. 취득세

- [illegible]

다. 지방소비세

- [illegible]

라. 주행분 자동차세

- [illegible]

차 례

요 약 / v

I. 서 론 / 1

II. 지방재정 현황 및 지방세제 변천 / 3

1. 지방세 세입 현황	3
2. 2011년 지방재정 현황	8
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8
나. 2011년도 지방재정 여건	10
3. 지방세제 변천의 개관	13
가. 지방세법 제정(1949년)	13
나.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해 지방세법 전문 개정(1960년대)	13
다. 지방재원의 충실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1970년대)	14
라. 행정구역의 개편 및 지방세제의 재원조달 기능 강화(1980년대)	15
마. 지방자치제도 실시 및 재정분권화 노력(1990년대)	15
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분권 추진(2000년대)	17
사.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2009년)	17
아. 지방세법의 분법(分法) 단행(2010년)	18

III. 지방세제 평가 / 20

1. 총괄평가	20
가. 재원의 배분	20
나. 재정적 독립성	22

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비중 및 세목별 비중	25
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26
2. 세목별 평가	27
가. 취득세	27
나. 재산세	33
다. 지방소비세	41
라. 주행분 자동차세(舊 주행세)	49
마. 지방세 비과세·감면	53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3

[참고자료 1] 경기도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동향 / 66

[참고자료 2] 서울시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동향 / 67

참고문헌 / 68

표 차례

[illegible]

그림 차례

[참고문헌1]	한국은행, 『2014년 한국경제전망』, 2014. 20
[참고문헌2]	한국은행, 『2014년 한국경제전망』, 2014. 21
[참고문헌3]	OECD, 『2014년 한국경제전망』, 2014. 27
[참고문헌4]	한국은행, 『2014년 한국경제전망』, 2014. 49
[참고문헌5]	한국은행, 『2014년 한국경제전망』, 2014. 50

I. 서론

- [illegible]

[illegible][illegible]

- 2011 年 12 月 31 日，本公司 2011 年度实现营业收入 1949 万元，较上年同期增长 10.2%。
- 2012 年 1 月 1 日，本公司 2012 年度实现营业收入 1000 万元，较上年同期增长 10.2%。

[illegible]

II. 지방재정 현황 및 지방세제 변천

1. 지방세 세입 현황

- □□□□□ □□□□□□ □□□□□□ □□□□□□, □□□□□□ □□□□□□ □□□□□□ □□□□□□ □□□□□□ □□□□□□ □□□□□□ □□□□□□.
- 2011□□ □□□□□□□□ □□□□(□□□□□□+□□□□□□)□□ □□□□ 41.1%
- 2005□□ □□□ □□□□□ □□□□ □□□□□□ □□□□□□ □□□□, 2011□□ □□□□□□□□40%□□ □□□□□
- □□□□□ □□: 2005□□35.2% □□2007□□38.0% □□2011□□41.1%

[표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의존재원 비중 현황

(단위: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체수입	57.1	60.7	65.9	73.7	80.8	79.4	79.3
의존수입(A)	32.5	37.4	42.6	47.8	53	55.3	58.0
지방채	2.8	3.3	3.5	3.5	3.7	5.2	3.7
합계(B)	92.4	101.4	112	125	137.5	139.9	141.0
의존재원 비중(A/B)	35.2	36.9	38.0	38.2	38.5	39.5	41.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 2011□□ □□□□: □□□□□□(잠□): □78.5 : 21.5□
- □□□□230.5□□, □□□180.8□□, □□□□49.7□□
- 2010□□□ □□□□: □□□□□□(□□□□□□ □□)□□ □78.2 : 21.8□

- □□□□□□ □□□□ □□□□ □□□ □□□□ □□ □□□□
51.2%□□124□□ □□□□ □□.(2011□□ □□□□(잠□) □□)

□ 243□□ □□□□□□□□ 절□□□□□ □□□□□□ □□□□□ □□□□ □□□□
□□□□□□

- □□□ □□□□□□ 2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 □□□□□□□□2010□□ □□□□□ □□□3.9% □□□□49.7□□□□ □□
□□□□ □□□□□ □□.

□ □□□ 2011□□□ □□□□□□ □□□□□ □□□□ 2010□□ □□□ □□□
10.6% □□□□180.8□□□□□ □□□□□ □□.

- 2011□□ □□□ □□(□□+□□□)□□230.5□□, □□□□ □□□□21.6%□□ □□
□□□□2010□(21.5%)□□ □□□ □□□□ □□□□□ □□□ □□□□ □□□.

- □□□□□□□ □□□□□□□□ 합친□ □□□ □□□□□ □□□□□□□□ 2011□
□□ □□□□ □□62.5□□□□□ □□□ □□□ □□□5.9% □□

□ □□□□□□□ 30.2□□□□□ □□□ □□□2.8□□□ □□, □□□□□□□
32.3□□□□□ □□□ □□□0.7□□□□□

- □□□ □□□ □□□□□ □□ □□□□□ □□□□ □□□□ □□□□, □□□□□□□
□□□□ □□□□□ □□.

- □□□□□□□ □□ □□□□□□□ □□□□ □□□□□□□□ □□□□ □□
□ □□□□□: 2005□□15.3□□□2010□□29.7□□, □□□□14.2%□

□ □□□□□: 2005□□17.2□□□2010□□25.5□□, □□□□8.2%□

- □□□□□□ □□□□□□ □□□ □□□□□ □□□□□□ □□□□□ □□□□
□□□ □□□□□□ □□□□□ □□□□ □□□□ □□□□□ □□.

[표 2] 최근 10년간 지방 징수실적

(단위: 억원)

세목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315,257	331,329	342,017	359,773	412,937	435,243	454,797	451,678	491,598	497,434
취득세	52,782	55,028	53,661	66,490	76,675	72,615	69,160	66,439	68,249	129,201
등록세	75,045	75,500	67,158	67,837	79,495	72,536	71,429	71,314	73,701	-
지방 소득세	-	-	-	-	-	-	-	-	81,454	84,342
재산세	8,175	9,034	10,178	25,874	31,090	37,551	44,113	44,233	48,173	80,151
자동차세	17,507	17,783	17,920	19,021	21,338	23,699	26,109	28,339	31,195	62,822
지방 교육세	39,565	40,093	40,837	38,407	43,381	45,139	48,644	47,944	48,710	47,434
담배 소비세	22,378	23,844	27,223	24,479	27,027	27,610	29,204	30,107	28,749	28,526
지방 소비세	-	-	-	-	-	-	-	-	26,790	27,249
등록 면허세	-	-	-	-	-	-	-	-	0	10,599
레저세	10,777	8,959	7,719	6,919	6,878	8,643	9,890	10,023	10,675	9,589
지역자원 시설세	-	-	-	-	-	-	-	-	-	7,254
주민세	38,975	45,582	49,139	55,003	62,148	74,115	81,630	75,519	2,234	2,973
주행세	10,634	12,658	17,503	22,925	27,095	32,702	30,812	32,871	31,691	-
도시 계획세	8,938	9,985	11,853	13,525	16,062	18,828	21,828	22,692	24,653	-
공동 시설세	3,749	4,109	4,648	4,464	5,163	5,433	5,885	5,912	6,496	-
지역 개발세	951	1,034	1,102	1,097	1,745	1,000	926	908	954	-
면허세	633	650	677	705	750	765	726	735	762	-
도축세	485	441	445	469	493	519	524	557	581	-
농업 소득세	27	36	41	-	-	-	-	-	-	-
종합 토지세	14,057	16,026	20,316	19	137	53	-1	9	-8	-
사업소세	4,731	5,247	5,672	6,207	6,774	7,311	7,995	8,080	-8	-
과년도 수입	5,848	5,320	5,925	6,332	6,686	6,724	5,923	5,996	6,547	7,294

주: 2002~2010년은 결산기준, 2011년은 예산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 4□□ □□□□□□ □□□ □□□□□ □□, 2010□ □□□□ □□ □□□□ 49□□ 1,598□□ □□□ □□□□□ □□□□ □□□ 12□□ 748□ □, 12□□8,767□□□□ □□□ □□□□□ 절□□ □□□□ □□□□ □□.
- □□□ □□ □□□□□□□□ 2010□□ □□□ □□□ □□□□□ □□ 27 □□ 3,803□□□□ □□ □□□□ 49□□ 1,598□□□□ 55.7%□□ □□□□□□, □□□□□□ □□□□□□ □□□ □□□□ □□□ □□□ □□.

[표 3] 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징수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전국	43,524,289,072	45,479,732,068	45,167,789,510	49,159,805,714
서울	11,885,827,645	12,537,671,426	11,922,706,125	12,074,839,558
부산	2,580,854,247	2,594,051,365	2,739,707,203	3,062,238,953
대구	1,598,148,130	1,627,708,120	1,573,443,287	1,818,647,709
인천	2,207,214,233	2,321,260,179	2,360,091,100	2,428,823,481
광주	877,199,616	901,716,086	976,111,149	1,077,113,639
대전	1,022,281,935	1,064,934,322	1,000,098,524	1,162,679,504
울산	1,040,105,157	1,127,065,144	1,060,227,100	1,230,508,241
경기	11,465,307,424	11,723,657,175	11,905,904,414	12,876,722,823
강원	1,097,949,575	1,074,505,017	1,065,002,563	1,222,508,876
충북	1,077,314,039	1,102,913,182	1,094,931,403	1,310,313,754
충남	1,649,345,065	1,739,467,374	1,793,494,631	2,097,037,626
전북	1,015,355,216	1,126,644,337	1,091,309,410	1,287,562,937
전남	1,127,642,189	1,248,968,031	1,288,286,821	1,434,292,173
경북	1,867,463,684	1,915,008,717	2,001,834,202	2,220,365,833
경남	2,565,186,700	2,929,102,807	2,880,090,674	3,334,663,683
제주	447,094,217	445,058,786	414,550,904	521,486,924

자료: 행정안전부.

2. 2011년 지방재정 현황

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 2010 □□ 139 □□ 8,565 □□ □□ 2011 □□ 141 □□ 393 □□ (0.8% □□)

○ □□ □□ □□ (1.5 □□ □□) □□ □□ □□ □□ (2.7 □□ □□)

□ □□□□□ □□ □□□□□ □□ □□□ □□□ □□□□ (1.9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1.9 □□ □□)

□ □□□□ □□□□ □□□□□ □□ □□□□ (1.9 □□), □□□□ □□□□ □□□□ □□ □□□□ □□□□ □□□□□. (0.9 □□)

[표 4]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당초 예산 규모

(단위: 억원)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당초예산(A)	비중	당초예산(B)	비중		
자체재원	846,055	60.5	830,779	58.9	-15,276	-1.8
지방세	478,785	34.2	497,434	35.3	18,649	3.9
세외수입	315,556	22.6	296,349	21.0	-19,207	-6.1
지방채	51,714	3.7	36,996	2.6	-14,718	-28.5
의존재원	552,510	39.5	579,613	41.1	27,103	4.9
지방교부세	255,505	18.3	274,085	19.4	18,580	7.3
국고보조금	297,005	21.2	305,528	21.7	8,523	2.9
합 계	1,398,565	100.0	1,410,392	100.0	11,827	0.8

자료: 행정안전부, 2011. 3.

- 공공서비스 예산(1.9조원, 전년대비 7.3%), 교육 예산, 공공서비스 예산, 공공서비스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 교육, 공공서비스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 공공서비스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20% 예산 예산 (2009년 17.6% 2010년 19.0% 2011년 20.2%)
- 공공서비스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 공공서비스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표 5]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 기능별 예산 규모

(단위: 억원, %)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당초예산	비중	당초예산	비중		
일반공공행정	119,448	8.5	124,714	8.8	5,266	4.4
공공질서 및 안전	21,768	1.6	23,366	1.7	1,598	7.3
교육	81,385	5.8	90,143	6.4	8,758	10.8
문화 및 관광	77,951	5.6	69,872	5.0	-8,079	-10.4
환경보호	149,009	10.7	150,300	10.7	1,291	0.9
사회복지	265,342	19.0	284,645	20.2	19,303	7.3
보건	22,250	1.6	20,082	1.4	-2,168	-9.7
농림해양수산	97,233	7.0	97,944	6.9	711	0.7
산업중소기업	30,031	2.1	30,395	2.2	364	1.2
수송 및 교통	164,801	11.8	151,119	10.7	-13,682	-8.3
국토 및 지역개발	128,439	9.2	116,452	8.3	-11,987	-9.3
과학기술	4,375	0.3	3,293	0.2	-1,082	-24.7
예비비	22,139	1.6	23,421	1.7	1,282	5.8
기타 (행정운영+기본경비)	214,394	15.3	224,644	15.9	10,250	4.8
합 계	1,398,565	100.0	1,410,393	100.0	11,828	0.8

자료: 행정안전부, 2011. 3.

- □□□ □□□ □□□□□□ □□□□30□ □□□ □□
 - □□□□ □□□□ □□□□ □□□□ □□□□2010□ □□□□□□ □□□ □□□□ □□, 2011□ □□□ □□□□ □□□ □□□ □□
- □□□ □□□□□□□□ □□□□ □□□□ □□□□51.9%, □□□□□□ □□□□ □□□ □□□□76.7%
 - □□□ □□□ □□□□□: 2010□□52.2%, 2011□□51.9%
 - □□□ □□□ □□□□□: 2010□□75.7%, 2011□□76.7%

[표 7]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 현황

(단위: 조원, %)

		2007	2008	2009	2010(A)	2011(B)	증감	
							B-A	증감률
일반 재원	지 방 세	38.1	43.5	47.1	47.9	49.7	1.8	3.8
	세외수입	27.9	30.1	33.8	31.6	29.6	-2.0	-6.3
	지방교부세	21.4	24.1	26.5	25.5	27.4	1.9	7.5
	소 계	87.4	97.7	107.4	105.0	106.7	1.7	1.6
국고보조금		21.2	23.7	26.5	29.7	30.6	0.9	3.0
지방채		3.5	3.5	3.7	5.1	3.7	-1.4	-27.5
합 계		112.0	125.0	137.5	139.9	141.0	1.2	0.8

주: 1. 각 연도 당초예산 순계기준임.

2.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의 당초예산 기준으로서 중앙정부의 2010년 지방교부세 교부액(내국세의 19.24%+2009년 결산정산분)과 국고보조금(경상보조+자본보조) 예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단위: %)

		전국	광역시				기초		
			특별시 (본청)	광역시 (본청)	도 (본청)	특별자치도 (본청)	시	군	자치구
재 정 자 립 도	평균	51.9	88.8	53.8	33.5	24.9	38	17.1	36.6
	최고 (단체)		88.8 서울	65.8 인천	60.1 경기	24.9 제주	69.4 용인	47.5 울주	82.8 서울강남
	최저 (단체)			42.0 광주	13.5 전남		9.6 남원	7.6 신안	14 부산영도
재 정 자 주 도	평균	76.7	89.7	70.3	46.5	63.4	68.7	62.7	56.2
	최고 (단체)		84.2 서울	73.6 울산	62.4 경기	63.4 제주	91.8 과천	74.4 홍천	84.8 서울강남
	최저 (단체)			65.4 광주	32.0 전남		55.7 김제	46.7 신안	33.0 부산북구

자료: 행정안전부, 2011. 3.

- □□□□ □□□□ □□ □□□□ □□□□ □□□□□□ □□□□□□
□□□□□□□□□□ □ □□□□□□□□□□□6)□□ 낮□□.
- □□□□□□ □□□ □□□□ □□□ □□□□□□ □□액□ □□□□ □□□□
□7)□□ □□□ □□□□ □□□□ □□□.

6)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7)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서 일반재원(자체수입+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 임□□□□□ □□□□ 군□□ □□□□□□□ □□□ □□□□□ 읍·□□□□ 군□□□□.
 - □□□□□□□□□□3□□, 독□□□□식□9□□ □□□□□□□□□.
 - □·군□□□□ □□□□□, □□□□□, 독□□(□□□, 농□□), □□□(□□□□□□□, □□□□□)□□□□□.
- 1966□□ □□□□□ 폐□□□ □□□ □□□□□□□□ □□□□ □□□□□□□□ 폐□□□ □□□□□□□□□□ 통합·□□□.**
- 독□□형식□□ □□□8□□□ □통□□□ □□□□2□□□□□□□□□□.
 - □□□ □□□ □□□□□ 독□□형□□□□□□□, □·군□□□□□□□ □□□□□□□□□□ □□□□□□□, □·군□□□□□□□ □□□□□□□□□□ □□□□□□□.

- 1973** □□ □□프□ □축□□ □□ □□ □□ □□ □□ □□ □□.
- □□ □□ □□ □□ □□ □□ □□ □□ □□ □□ □□ □□.
 - □□ □□ □□, □홍□식□, □허□, □□□, □□ □□ □□ □□ □□ □□ □□ □□ □□.
- 1976** □□ □□ □□ □□ □□ □□ □□ □□ □□ □□ □□, □·군
□□ □□ □□ □□ 폐□ □□ □□ □□ □□ □□ □□ □□.
- □홍□식□ □□ □□ □□ □□ 통합, □□ □□ □□ □□ 양□ □□□, □
□□ □□ □□ □□.
 - □□ □□ □□, □□□, □허□, □·군□□ □□□, □□□, □□□□, 농
□□, □축□, 마□ □□ □□ □□ □□ 획□, □□ □□ □□ □□ □□ □□
□□ □□ 통□8□□, □□□3□□ □□.

[표 9] 1988년 시·구 도입 후 목변화 비교

과세 주체	이 전		이 후	
	특별(직할)시	도, 시·군·구	특별(직할)시	도, 시·군·구
광역 -특별시 -광역시 -도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토지과다보유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기초 -자치구 -사군구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판매세 -토지과다보유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판매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목적세] -사업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자료: 행정안전부.

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분권 추진(2000년대)

- [illegible]

사.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2009년)

- [illegible]

9) 정부에서는 2013년에 지방소비세 재원규모를 부가가치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

[illegible]

[표 10] 지방 법 분법(分法) 개요

舊 法(1개법)			현 행(3개법)	
지방 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	지방세법	
	제4장(목적세)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표 11] 2010년 지방 목 간소화

과세 주체	2010년		2011년 시행	
	특별(광역시)시	도, 시·군·구	특별(광역시)시	도, 시·군·구
광역 -특별시 -광역시 -도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지방소비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기초 -자치구 -시·군·구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보통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자료: 행정안전부.

III. 지방세제 평가

1. 총괄평가¹⁰⁾

가. 재원의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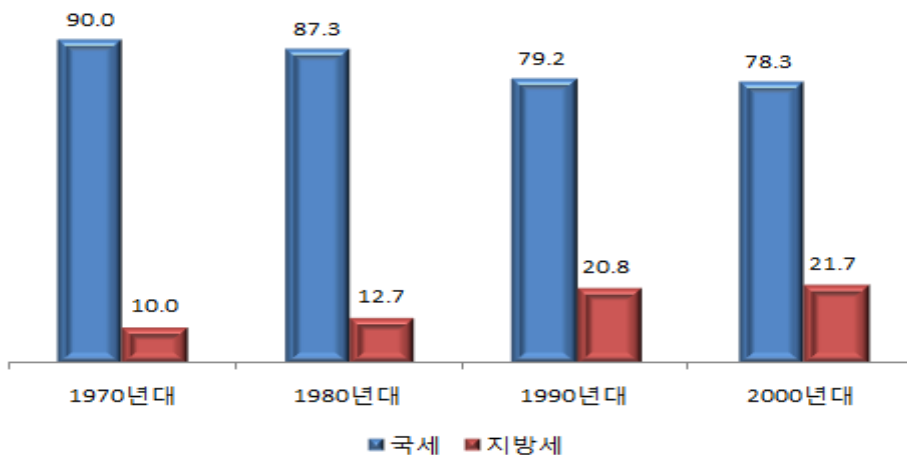
☐ □□□□□□□□□□, 1995□□□□□□□□□□□□□□□□□□□□
□□□□□□.

- 1970~8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12.7%로, 1980년대에는 20.8%로 증가하였다.

□ 1991 □□ □□ · □□□□ □□□□□□ □□ □□□□□□ □□□□, 1993 □□
□□ · □□□□ □□□□□□ □□□□ □□□□□□ □□, 1999 □□ □□□□ □□

[그림 1] 시대별 국 와 지방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통계청.

10) 김필현·김소린, 지방, 과연 자치제인가?-바람직한 지방세 확대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참조

- 2009년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반면, 지방세 지출은 4.4% 증가하여 14%의 적자 규모를 기록하였다.

나. 재정적 독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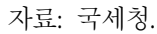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은 지방세 수입의 비중과 지방세 지출의 비중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높고 지방세 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재정적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은 지방세 수입 비중과 지방세 지출 비중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높고 지방세 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재정적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은 지방세 수입 비중과 지방세 지출 비중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높고 지방세 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재정적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2003년 지방세 수입 비중이 2002년 대비 1.1%p 증가한 반면, 지방세 지출 비중은 1.1%p 증가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은 지방세 수입 비중과 지방세 지출 비중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높고 지방세 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재정적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은 지방세 수입 비중과 지방세 지출 비중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높고 지방세 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재정적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2003~2010년 지방세 수입 비중이 20.1%p 증가한 반면, 지방세 지출 비중은 17.3%p 증가하였다. 지방세 수입 비중의 증가폭이 지방세 지출 비중의 증가폭을 상회하여 재정적 독립성이 향상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은 지방세 수입 비중과 지방세 지출 비중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높고 지방세 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재정적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 □ · □□□□□ □□□ □□□□□ □□□□ □□.
- □□□□ 2000~2009 □□ □□□ □□□□ □□□□, □□□□ □□□□ □□ □□□□ □□□□ 22.0%, □□□□ 19.5%, □□□□ 17.3% □□□□ □□□□ □, □□□ □□□ □□□□ 36.7%, □□□□ 32.3%, □□□□□□ 22.2% □□□□ □□□□ □□□□□□ □·□□□□□ □□□□ □□□□□ □□□.
 - □□□ □□□ □□□ □□□□□ □□□□□□ □□□ 28.5%, 16.8% □□ □□□□ □□□, □□□ □□□□□ □□□ 25.3%, 21.7% □□ □□□□ □□ □□□□ □□□ □□□□ □□.
 - □□□ □□□□□ □□□ □□□□□ □□□□ □□□ 52.6% □□ □□□ □□□□ □□□ □□□□ □□□□□ □□.

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 [illegible]

(단위: %)



가. 취득세

☐ ○○○○○○○○○○○○○○○○○○○○○○○○, ○○, ○○, ○○, ○○, ○○○○○○○○○
○○○○, ○○, ○○, ○○○○○○○○○, ○○○○○○○○○○○○○○○○○○○○○○○○○○○○○○○
○○○○○○○○○○○○○○○○○○○○○○○○○, □○○○○○○○○○○·무○○○○○○○○○○
○○○말□.(○○○○○○6□□1호)

- 따□□, □□□□□ □□□, □□, □□□□, 골프□□□□ □□ □□□□□□ □□
□□ □□□□ □□ □□□□□□ □□□□□ □□□□.
- □□□□□□ □□□·□박·□업□·□업□·□□·□□□□·□□·항□□·골
프□□□·중□□□□□□ □□□□□·▣ □□□□·콘□□니움□□□, □□
□□□ □□·□□·□□, □□□□ □□변□, □박·□□·□□□□□□ 중□변
□, □□□□□ □□□□□ □□.

-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2006년의 거래율 변동

< 현 행 >	< 완 화 >
• 개인간 거래 2.5% (취득세 1.5%, 등록세 1.0%)	• 개인간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4.0% (취득세 2.0%, 등록세 2.0%)	• 법인과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illegible]

(3) 문제점 및 평가

- [illegible]

[표 18] 주택유상거래 취득 감면 현황(2011. 1. 1. ~ 2012. 12. 31.)

(단위: %)

구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2011.1.1~ 2011.3.21	2011.3.22~ 2011.12.31	2012.1.1~ 2012.12.31
9억원이하 1주택자	4	2 (50%감면)	1 (75%감면)	2 (50%감면)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		4 (감면없음)	2 (50%감면)	4 (감면없음)

자료: 행정안전부, 2011. 10.

[illegible]

○ □□□□□ □□□□□ □□□□ □□□□ □□□□ □□□□ □□말□□
□□□□□ □택□□□래□□ □□□□□□□□ 50% □□□□ □□□□ □□3.22
□택□래□ 활□□□□ 책□□□□ □□□□.

- [illegible]

나. 재산세

(1) 개요

☐ ○○○○ ○○6월1□(○○○○) ○○○□, □택, □□□, □박, 항□□
○○○○○○○○○○○○○○○○.

- 13)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에 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총리실차장, 기획재정부차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납□□무□□□ □□□□□□ □□(□□□ 6월 1□) □□□□ □□□□ □□□□
□□□□
- □□·□□□·□택□□ □□□ □□□□□□ □□□□□□ □□□□□□ □□□□□
□□□ □향□□ □□□□□□ □□□□□□ □□□□□□ □□□□□□ □□□□□□ □□□□□□
□□□ 범□□□□ □□□□□□ □□□□□□ □□□□□□ □□□□□□ □□□□□□ □□□□□□
□□□□□□ □.

□ 2010 □□ □□□□ □□□□ □□□□ □□□□ □□□ 49□□ 1,598억 □□□
9.8% □□4□□ 8,173억 □□.

(2) 재산세 탄력세율제도 운용

- [illegible]

- 14) 과세요건법정주의는 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항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불복·별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당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국민의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표 19] 현행 지방 법상의 탄력 율 제도

세목			세율조정
취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의 율을 표준 율의 50/10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등록 면허	등록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 의 율은 표준 율의 50/10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면허분		기본 율
레저			기본 율
담배소비			율의 30/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음
지방소비			기본 율
주민	균 등 분	개인 (사업소없음)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 는 액
		개인 (사업소있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율을 표준 율의 50/10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법인	
	재산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율을 표준 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지방 소득	소득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율을 표준 율의 50/10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종업원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율을 표준 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재산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 의 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 율의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가감한 율은 당해연도에만 적용함)
자동차	소유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의 율을 배기 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 율의 50/10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 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 면 그 율의 30/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

150%초과	100%초과	80%초과	50%초과	50%미만
강남구(196.6%)	중 구(140.6%) 서초구(126.5%)	송파구(93.9%) 종로구(88.4%) 영등포(81.1%)	양천구(57.2%) 용산구(53.3%) 강동구(52.9%)	강서구(49.9%) 도봉구(34.2%) 마포구(48.8%) 서대문(32.2%) 구로구(44.3%) 강북구(31.4%) 성북구(42.2%) 노원구(31.3%) 동작구(41.0%) 금천구(30.7%) 광진구(40.5%) 은평구(30.3%) 성동구(40.1%) 중랑구(26.3%) 동대문(37.4%) (16개 구) 관악구(34.5%)

[자치구간 재정격차 현황('06 세입예산기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강남 : 중랑 (7.5 : 1)

재산세 세수 - 강남 : 금천 (124 : 1)

←

□ □□ 파 □□ □□ □□ □□ □□ “□□ □□ □□ □□ □□” □□ □□ □□ □□
2008 □□ □□ □□ □□ 40%, 2009 □□ 45%, 2010 □□ 50% □□ □□ □□ 순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9 □□ □□ 10 □)¹⁷⁾

17)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 재산세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 18) 동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재산세가 반드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세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은 법률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보장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조세 등 수입원을 보장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그러한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리고 어떤 종류의 조세를 어떤 기관에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조세의 과세근거, 징수의 효율성, 조세의 귀속주체간의 재정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어떤 종류의 조세를 반드시 국세나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은 없다고도 하였음.

심□□□ 따□□ □□□중□□□□ □□□ □□□ 100%, □□□□ □□□ 200%, □□□ □□□□ □□ 300% □□ □□□ □□□□ □□(□□□□□□ □□)□□ □□□ □□□ □□□□□□□□ □□□ □□□□ □□□□ □□.

(2) 지방소비세 배분실적

- 2010□□ □□□ □□□□ □□□ □□□□□□ □□□ 49□□ 1,220억□□□, □□□ 따□□ □□□□□□ □□□ 2□□ 6,790억□□□□ □□났□.
- □□□□□□ 8,778억□(32.8%), □□□□□ □□□□□□ 6,168억□(23.0%), □□□□ □□□□□ □□□ 1□□ 1,842억□(44.2%)□□ □□□□□.
- □□□ □□□□ □□□□ □□□□ □□□□ □□□□□ □□□□ □□□□ □□□ □(58.1%)□□ 완□ 된□ □□□.

-
- 19)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표 21] 전년대비 시도별 지방소비액 및 배분비율

(단위: 억원, %, %p)

	지방소비세액				배분비율		
	2010년	2011년	증감규모	증감율	2010년	2011년	차이
전국	26,790	27,861	1,071	4.0	-	-	-
수도권	8,778	9,117	339	3.9	32.8	32.7	-0.04
서울	4,268	4,373	105	2.5	15.9	15.7	-0.24
인천	793	835	42	5.3	3.0	3.0	0.04
경기	3,717	3,909	192	5.2	13.9	14.0	0.16
광역시	6,168	6,378	210	3.4	23.0	22.9	-0.13
부산	2,179	2,240	61	2.8	8.1	8.0	-0.09
대구	1,443	1,501	58	4.0	5.4	5.4	0.00
광주	865	895	30	3.5	3.2	3.2	-0.02
대전	958	991	33	3.4	3.6	3.6	-0.02
울산	723	751	28	3.9	2.7	2.7	0.00
도	11,842	12,365	523	4.4	44.2	44.4	0.18
강원	1,194	1,241	47	3.9	4.5	4.5	0.00
충북	1,155	1,205	50	4.3	4.3	4.3	0.01
충남	1,591	1,673	82	5.2	5.9	6.0	0.07
전북	1,348	1,414	66	4.9	5.0	5.1	0.04
전남	1,299	1,361	62	4.8	4.8	4.9	0.04
경북	2,052	2,126	74	3.6	7.7	7.6	-0.03
경남	2,737	2,861	124	4.5	10.2	10.3	0.05
제주	466	484	18	3.9	1.7	1.7	0.00

주: 표의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므로 합계는 숫자들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

□ □□□ □□□□ □□□ □□, □□□□□□ □□□ □□□□ □□□□□□
완□된□ □□□ □□났□□, □□□□ □□□ □□ □□□□ 2010□□ □□□□
58.1%, 2011□□ □□□□ 57.4%□□ □□난□ □□, □□□□□□ □□□ 32.8%□□
32.7%□□ □□□.

- □□□□ □□□□□□ □□□ □□□ □□□ 25.4%p□□ 24.7%p□□ □□
□□□□□ □□□□□ □□□ □□□□□ 75% □□□ 완□□□□ □□□ 알□
□□□□.

- 셋째,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4) 평가

-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표 22]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원구조 비교

지방세 세원	소득·소비			재 산	기 타
		소 득	소 비		
OECD 평균	60.9 %	40.3	20.6	34.4	5.6
한 국	32.1 %	16.3	15.8	48.8	19.1

자료: 행정안전부, 2011.

-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 첫째,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 □□□ □□□ □□ □□□□ □□□ □□□□ □□□□ □□□□ □□□□ 같
□□ □순□□ □□□중□□□□□□ □□□□ □□□(□□□□ 100%, □□□□ □□
□□ 200%, □□□ □(道)□□□ 300%)□□ □□□ □□□□□ □식□□□, □□ □□□□
□□□□□□ □□□□□ □□□□ □형□□□□ □루□□□ □□ □□□□ □□□□□□□
□□□□□□ □□□□□ □□□□ 검□□□□ □필□□□ □□□□ □졌□
- □□□ □□□□□□□□ □□□□ □□□□ □□, □□□(□□, □□, □□)□□
□□ □□□ □□□□□□□□□□ 51.4% □□ □□□□□ □□.(□□□ □□□□□ 20.8%, □
□□ □道□ 27.8%)
- □□□□ □□□ □식□□ 따□□ □□□□□□□□ □순□□□□□□ □□, □□□□□ 19.7%,
□□□□□□ 15.7% □□□□□ □□, □□□□□ □□□□ □□□□□ 5% □□□□ □
무□□□□□□.

- 

따라서, 지방세, 국세, 지방세·국세 감면 현황

(2)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2010년 12월 31일 「지방세법」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국세 수입 13조 9,832억 원에 비해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국세 수입 15조 270억 원에 비해 1조 438억 원의 감면액이 발생함.
- 2010년 지방세·국세 감면액 22.3%에 비해 2009년 지방세·국세 감면액 25.0%에 비해 2.7%p 감소함.
- 지방세·국세 감면액 2010년 30조 1,396억 원에 비해 2009년 31조 621억 원에 비해 9,225억 원의 감면액이 발생함, 지방세·국세 감면액 14.7%.

[표 24] 지방세, 국세 비과세·감면 현황 총괄

(단위: 억원, %, %p)

		2009 결산(A)	2010 추계(B)	증감(B-A)
지방세	지방세 비과세·감면총액	150,270	139,832	-10,438
	비과세	59,715	57,064	-2,651
	감면	90,555	82,768	-7,787
	지방세 수입총액(B)	451,678	487,907	36,229
	비과세·감면율(A/A+B)	25.0	22.3	-2.7
	GDP 대비 비과세·감면비중	1.4		
국세	국세 감면총액(C)	310,621	301,396	-9,225
	국세 수입총액(D)	1,645,407	1,750,125	104,718
	국세 감면율(C/C+D)	15.9	14.7	-1.2
	GDP 대비 국세·감면 비중	2.9		

주: 지방세와 국세 공히 2009년은 결산(실적)치이고 2010년은 추계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2011. 5), 기획재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10. 10), 한국은행, 「ECOS(www.ecos.bok.or.kr)」(2011. 5)

- □□□□ □□□□ 3□□ 6,976억□□ □□□□ □생□□, □□□□ 3□□ 1,465억□□ □□□□ □생□□ □□□□ □□□□, □□□□□□□□ 1□□ 284 억□□ □□□□ □생□□ □□□□ □□
- □□□□ □□□□ □□□□, 2010□□□□ □□□□□ □□□□□ 39.4%□□ □□□□, □□□□□ □□□□□ □□□□□ 36.8%, □□□□□ 34.0%, □□□□□ □□□□□ 27.4%, □□□□□□□ 26.1%□□ 순□□□□ □□□□.

[표 26] 지방 목별 비과 감면 현황

(단위: 억원, %)

	2009 결산			2010 추계			비교증감	
	징수액	감면액 (A)	감면율	추계액	감면추계 (B)	감면율	B-A	증감률
보통세	360,137	139,545	27.9	395,990	130,472	24.8	-9,073	-6.5
취득세	66,439	47,264	41.6	68,135	44,350	39.4	-2,913	-6.2
등록세	71,314	42,524	37.4	71,841	36,976	34.0	-5,547	-13.0
면허세	735	35	4.6	672	51	7.0	15	43.5
레저세	10,023	157	1.5	9,703	75	0.8	-82	-52.3
주민세	75,519	92	0.1	16,820	495	2.9	403	436.2
지방소득세	0	0	-	65,521	1,505	2.2	1,505	-
재산세	44,233	29,913	40.3	54,153	31,465	36.8	1,552	5.2
자동차세	28,340	3,780	11.8	29,790	2,546	7.9	-1,235	-32.7
주행세	32,871	2,836	7.9	29,596	2,725	8.4	-111	-3.9
담배소비세	30,107	12,943	30.1	29,139	10,284	26.1	-2,659	-20.5
지방소비세	0	0	-	20,143	0	0.0	0	-
도축세	557	0	0.0	477	0	0.0	0	-
목적세	91,532	10,725	10.5	82,793	9,360	10.2	-1,365	-12.7
공동시설세	5,912	747	11.2	6,001	811	11.9	64	8.5
지역개발세	908	4	0.4	809	3	0.4	0	-7.5
지방교육세	47,944	1	0.0	46,677	3	0.0	1	110.2
도시계획세	22,692	8,025	26.1	22,532	8,484	27.4	459	5.7
사업소세	8,080	1,948	19.4	0	59	100.0	-1,888	-97.0
과년도수입	5,996	0	0.0	6,774	0	0.0	-	-
합 계	451,669	150,270	25.0	478,783	139,832	22.6	-10,438	-6.9

주: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세지출보고서」(2011. 5), 「2010 지방세정연감」(2010. 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10. 4)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09년 국세감면액 3,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총액 1,646,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감면액 3,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국세수입총액 1,646,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3.6%, 2009년 14.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연도별 국세 감면 현황: 2005~2009년

(단위: 억원, %)

	국세감면액(A)	국세수입총액(B)	국세감면율 A/(A+B)
2005	200,169	1,274,657	13.6
2006	213,380	1,380,443	13.4
2007	229,652	1,614,591	12.5
2008	287,827	1,673,060	14.7
2009	283,968	1,646,382	14.7
연평균 증가율	9.1	6.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0. 9)

(3) 문제점 및 평가

- 첫째, 국세감면액 3,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총액 1,646,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3.6%, 2009년 14.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국세감면액 3,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총액 1,646,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국세감면액 3,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총액 1,646,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3.6%, 2009년 14.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llegible][illegible]

[표 29] 연도별·법률별 지방 감면 현황: 2005~2009년

(단위 : 억원, %)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 레	소 계
2005	17,150	14,051	5,227	16,494	35,772
2006	22,779	44,987	3,263	9,853	58,103
2007	48,982	50,766	3,334	9,930	64,030
2008	51,565	50,957	9,891	15,733	76,581
2009	59,715	59,897	13,849	16,809	90,555
연평균 증가율	36.6	43.7	27.6	0.5	26.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 □□□□ □□□ □□□□ □항□□ □□□ □□ □□□□ □□□□ □□□
 □□□□□□□□□ □□□ □□□ □□□□□ □□□□□, □□□□□ □□
 □□□□□□□ □□□ □□□□□ □□□□□□□□ □견□ □영□□ □□□ □렵
 □□□ □□□□ 지방세 감면규정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조정하는 조치가
 필요□□□□ 봄.³²⁾

32)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음.

[참고자료 1] 경기도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동향

구 분	2005년 인하비율	적용기한	개정 동향
수원시	30%	계속적용	
성남시	50%	계속적용	
고양시	50%	계속적용	
부천시	50%	계속적용	
안양시	30%	계속적용	
안산시	-	-	2005.10.28 50% 인하결정, 2006년부터 적용
용인시	50%	계속적용	
의정부시	-	-	
남양주시	50%	계속적용	
평택시	-	-	검토중(보류)
광명시	30%	-	
시흥시	-	-	50%인하결정 2006. 3.15
군포시	30%	계속적용	
화성시	-	-	의원 발의 (2006.4.7)
파주시	25%	계속적용	
이천시	-	-	
구리시	50%	계속적용	
김포시	-	-	
포천시	-	-	
광주시	-	-	검토중 (30%~50%)
안성시	-	-	
하남시	50%	계속적용	
의왕시	40%	계속적용	
양주시	-	-	
오산시	-	-	
여주군	-	-	
양평군	-	-	
동두천시	-	-	
과천시	50%	계속적용	
가평군	-	-	
연천군	-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2] 서울시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동향

연번	구 명	방 침 결재일	입 법 예고일	구의회 의결일	적용비율	비고
1	종 로					미검토 상황
2	중 구				△40%	전년도 조례 유지
3	용 산				△20%	전년도 조례 유지
4	성 동				△10%	전년도 조례 유지
5	광 진				△10%	전년도 조례 유지
6	동대문	1.26	입법예고종료	4.12	△20%	집행부 발의
7	중 량				△20%	전년도 조례 유지
8	성 북				△20%	전년도 조례 유지
9	강 북				△20%	전년도 조례 유지
10	도 봉					미검토 상황
11	노 원	3. 13	입법예고종료		△20%	집행부 발의
12	은 평					미검토 상황
13	서대문					미검토 상황
14	마 포				△20%	전년도 조례 유지
15	양 천				△30%	전년도 조례 유지
16	강 서				△20%	전년도 조례 유지
17	구 로				△20%	전년도 조례 유지
18	금 천					검토중
19	영등포				△20%	전년도 조례 유지
20	동 작				△20%	전년도 조례 유지
21	관 악				△20%	전년도 조례 유지
22	서 초				△30%	전년도 조례 유지
23	강 남					△30%안 유력 4월중
24	송 파	3. 13	입법예고종료	4월 초순경	△30%	
25	강 동	2.27		3.31	△25%	집행부 △20% ⇒ △25%로 수정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문헌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

전동훈, “지방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09.

정중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2011.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II」, 2011.

_____,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2011.

_____,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1.

_____,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1.

_____,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 지방재정분과
토론 자료집」, 2011.

기획재정부,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06~2010.

사업평가 현안분석 목록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	국내 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및 경쟁전략 수립	구상욱	2004.11
2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사업평가와 개선방안	최미희	2005. 2
3	성과지표측정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사업 평가	신동진	2005. 4
4	과학기술부문 경쟁력 평가: 한·중·일 지식기반 기술경쟁력 평가를 중심으로	권용수·박추환	2005. 4
5	두뇌한국21 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이용준·이선주· 김혜영	2005. 4
6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항만개발의 발전 방안	남광현	2005. 5
7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재철	2005. 5
8	IT839 전략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박추환	2005. 5
9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배종학	2005. 8
10	간접투자자산운용 정책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구상욱	2005. 8
11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은행구조조정의 성과평가	신동진	2005. 8
12	교통시설 SOC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필요성 고찰	안태훈	2006. 5
13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자원조달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이은경	2006. 6
14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별 환경성·경제성 분석	최미희·서세욱	2006. 6
15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박추환	2006. 7
16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김병진	2006. 9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7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개선방안	최미희	2007. 9
18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방법	이인섭·금재덕	2007.12
19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안태훈	2008. 9
20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최미희·이은경· 김현중·서세욱	2008.10
21	공기업 서비스의 교차보조현황 및 문제점	허가형·안태훈· 이은경·이화실	2008.10
22	공기업 택지개발이익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	안태훈	2008.10
23	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은경	2009.10
24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박홍엽	2009.12
25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및 과제	제민·허가형	2010. 4
26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최미희·임도진	2010. 4
27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여차민	2010. 9
28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현황 및 쟁점	제민	2010.10
29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 -국유지를 중심으로	남은정	2010.10
30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제민	2011. 8
31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부산·인천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정유훈·안태훈	2011. 9
3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이채정	2011. 9
33	방위력 개선사업 재정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천우정·여차민	2011.10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발 간 일	2011년 12월 16일
편 집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발 행 인	주영진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 788 4749
인 쇄 처	성지문화사 02 2273 5090
1.	.
2.	!"#\$%&'()*+,-./0123456789:; (TEL 02 788 4749)/ 01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